

## 최고재판소 2007.4.27.판결

손해배상청구 상고사건

상고인 니시마쓰 건설 주식회사 (西松建設株式會社)

피상고인 뤼(呂)모 외 4명

###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피상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 및 상고 비용은 피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제 1 사안의 개요

1 피상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며,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중국 화북지방에서 일본국에 끌려가 상고인 밑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피상고인 宋모, 邵모, 망 呂모, 망 楊모 및 망 曲모 이하"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이나 그 승계인들이다. 이 사건은, 피상고인들이, 상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가혹한 조건으로 강제 노동에 종사시킨 것은 안전 배려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상고인에 대해 채무 불이행 등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상고인은 강제 연행 또는 강제 노동으로 볼 만한 사실이 없고, 또 상고인과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는 안전 배려 의무의 기초가 되는 고용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책임 원인을 다투고,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를 원용했다. 또, 소위 전후 처리 과정에 있어서 조약 등에 따른 청구권 포기의 결과, 상고인이 이 사건 청구에 응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한다.

2 피상고인들이 주장하는 강제 연행 및 강제 노동의 실상에 관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 관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국은 1937.7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 교전 상태에 들어가(이하 이것을 "중일 전쟁"이라 한다), 1941.12.8.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소위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다. 이 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특히 군수 회사의 중근(重筋) 부문(광산 노동, 토목 건축, 항만 하역 등)의 인력이 고갈되었다. 일본국 정부는 이 같은 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1938.4.에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면서 당시 일본국에 병합되었던 한반도에서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국 내지에 이입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했지만, 중근 부문의 심각한 인력 부족은 해소되지 않았다.

- (2) 석탄 산업, 토목 공업 등의 산업계는 전쟁의 비교적 초기부터 인력 부족이 생기는 일을 내다보고, 외지 인력, 특히 중국 화북 지방의 노동자 이입을 검토하여 일본국 정부에 그 실현을 위한 요망을 제출해왔다. 일본국 정부는 이에 응하여, 1942.11.27., "화인(華人) 노무자 국내 이입에 관한 건"이란 각의(閣議) 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는, "내지에서의 노무 수급은 더욱더 팽박해지고 특히 중근 노무 부문에 있어서 인력 부족의 현저한 현상에 비추어 다음 요령에 따라 화인 노무자를 내지에 이입함으로써 대동아 공영권 건설의 수행에 협력시키려고 한다."는 방침하에, 먼저 시험적으로 일정 수의 중국인 노동자를 이입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점차 본격 실시로 넘어가기로 했다. 이 방침에 따라 1943.4.부터 11 월에 걸쳐 1400 여 명의 중국인 노동자의 시험 이입이 실시됐다.
- (3) 일본국 정부는 시험 이입의 실적을 바탕으로, 1944.2., "화인 노무자 내지 이입 촉진에 관한 건"이라는 차관 회의 결정으로, 본격 도입 실시 요령, 세목 절차를 책정하면서, 같은 해 8 월 각의 결정된 1944 년도 국민동원 실시 계획으로, 조선인 노동자 29 만 명의 내지 이입과 중국인 노동자 3 만 명의 본격 이입을 실시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들 결정에 따라 그 해 3 월에서 1945.5.까지, 161 집단 3 만 7524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국 내지에 이입됐다.
- (4) 상고인(이 사건 당시의 상호는 니시마쓰구미(西松組))은 중국 대륙에 진출하는 일본국군의 군사 행동에 추종하고 철도 건설, 도로 공사 등을 대거 수주하던 토목 건축 회사이며, 히로시마(廣島)현 야마가타군(山縣郡)에서, 1943. 6.부터 1947.3.까지를 공기로한 야스노(安野) 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위해 필요 충분한 노동자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족을 중국인 노동자로 보충하기 위해 1944.4., 노동자 할당과 관리를 소관했던 후생성(厚生省)에 대해, 이 발전소 건설 공사를 위한 중국인 노동자 이입을 신청하여 300 명의 할당을 받았다. 상고인은 이에 응하여, 현지에서 중국인 노동자의 공출 기관으로 활동하던 화북 노공 협회와

중국인 노동자 공출 및 수용(受容)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그 해 7 월, 칭다오(靑島)에서, 일본국군의 감시하에, 화북 노공 협회에서 상고인에 대해 중국인 노동자 360 명이 인도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들 중 5명이다.

(5) 위 360 명 중국인 노동자들은, 1944.7.29. 칭다오에서 화물선을 타고 7 일 만에 시모노세키(下關)항에 도착했지만, 그 사이에 3 명이 병사했다. 그 후 중국인 노동자들은 야스노 발전소 사업장까지 옮겨, 4 그룹으로 나누어 수용 시설에 수용되어 감시원과 경찰관이 상시 감시하에 놓였다. 위 중국인 노동자들은 도수 터널 굴착 등의 노동에 주야 2 교대로 종사하게 되었으나, 하루 3 끼 지급된 식사는 양이 극히 적고, 조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두 말라, 항상 공복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또, 옷과 신발 지급, 위생 환경 유지 등이 매우 소홀하여, 상병자들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945.3.에는 상병으로 노무에 견디지 못한다는 이유로 13 명이 중국으로 송환되었다. 또한 같은 해 7.13.에는, 도살한 소의 고기 분배를 놓고 중국인 노동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이전부터 일본인 현장 감독에 협력적이어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보여져 동료로부터 미움을 받던 중국인 노동자의 대대장 등 2 명이 박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16 명은 히로시마 교도소 등에 수감됐는데, 같은 해 8. 6 원자 폭탄 투하로 5 명이 숨지고 다른 11 명도 피폭했다.

(6) 종전 후인 1945.8.24., 상고인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야스노 발전소 사업장에서의 중국인 노동자 가동 정지 지시를 받고, 그 가동을 정지시켰다. 그 후 중국인 노동자들은 연합군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되기로 되었다. 같은 해 11. 24. 위 사업장에서 반송되어 같은 달 29 일 나가사키(長崎)현 하에노사키(南風崎)에서 중국으로 송환되었다. 당초의 360 명 중, 이때까지, 전술한 이입 도중 사망자 3 명 외에, 26 명이 사망했다. 또한 중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모든 사업장을 보면, 이입자 총수 3 만 8935 명 중, 송환 때까지 사망한 사람은 6830 명 (17.5%)이다.

(7) 종전 후, 중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토목 건설업자 단체는 중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것에 따라 여러가지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해서, 국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을 반복하여, 국가도 1946.3.경, 이 요망을 일부 수용한 처치를 강구하기로 했다.이로 인해, 상고인은 그 무렵 92 만 여 엔의 보상금을 취득했다.

(8)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가족들과 일상 생활을 보내다가, 일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았거나 갑자기 강제로 트럭에 실리거나 해서

수용소에 끌려가고, 혹은 일본국군의 포로가 되고 수용소에 수용된 후 위와 같이 일본국 국내에 끌려가고, 야스노 발전소 사업장에서 노동에 종사했지만, 일본국 내지로 가서 상고인 밑에서 가동할 것을 사전에 알려지고 이를 승낙한 것이 아니고, 상고인과 사이에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상고인 宋모(이입 당시 16 세)은 취업 중 광차 탈선사고로 두 눈을 실명하여, 피상고인 鄒모(이입 당시 18 세)는 위독한 옴으로 몸져누워, 모두 가동할 수 없게 되었고, 1945. 3.에 중국에 송환되었다. 망 呂모(이입 당시 23 세) 및 망 楊모(이입 당시 21~22 세)는, 위 (5)의 대대장 박살 사건의 피의자로서 수감 중에 원자 폭탄의 피해를 당하고 楊모는 사망하여 呂모는 후유 장애를 입었다. 망 曲모(이입 당시 18~19 세)는 어느 날, 고열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종사하는 것을 강요되어, 일하지 않는다 등으로 해서 현장감독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3 전후 처리에 있어서의 청구권 포기 등에 관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 관계의 개요 등(공지의 사실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국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 연합국의 점령하에 놓였지만, 1951.9.8., 샌프란시스코시에 있어서, 연합국 48 개국과,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이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1952.4.28. 위 조약의 발효에 따라 독립을 회복했다. 이 조약은 제 2 차 세계 대전 후의 일본국 전후 처리의 골격을 정한 것이며, 각 연합국과 일본국 사이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1 조(a)), 연합국이 일본국 국민의 주권을 승인하는(1 조(b)) 동시에, 영역( 제 2 장), 청구권 및 재산( 제 5 장) 등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체결된 것이다. 단, 후술하는 대로, 중국 (중일 전쟁을 싸운 국가로서의 중국을 말한다. 이하 같음)이 강화 회의에 초청되지 않고, 인도 등은 초청에 응하지 않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등은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든 연합국 과의 전면 강화에는 이르지 못 했다.

(2)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는 전쟁 배상 및 청구권 처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가. 일본국은, 전쟁 중에 불러일으킨 손해 및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승인된다. 그러나 또, 존립 가능한 경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 일본국의 자원은, 일본국이 전기의 모든 손해 및 고통에 대해 완전한 배상을 하고 동시에 다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충분하지 않은 것이 승인된다(14 조(a) 본문).

- 나. 일본국은 현재의 영역이 일본국 군대로 점령되고, 동시에 일본국에 의해 손해를 주어진 연합국이 희망할 때에는, 생산, 침몰선 인양 기타 작업에 있어서 일본국민의 역무를 해당 연합국의 이용을 위해 제공함으로써, 끼친 손해를 수복할 비용을 이들 국가에 보상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당해 연합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다(14 조(a)1. 이하, 이 규정에 의한 역무 제공을 "역무 배상"이라 하는 것이 있다.).
- 다. 각 연합국은, 일본국 및 국민 등의 모든 재산, 권리 및 이익 중, 이 조약의 최초의 효력 발생시에 그 관할하에 있는 것(전쟁 중 연합국 정부의 허가를 얻고 연합국 영역에 거주한 일본국민의 재산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을 압류, 유치, 청산하여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권리를 가진다(14 조(a)2).
- 라. 이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 전쟁 수행 중에 일본국 및 그 국민이 행한 행동으로 생긴 연합국 및 그 국민의 기타 청구권 및 점령의 직접 군사비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14 조(b)).
- 마. 일본국은, 전쟁으로 발생하거나 전쟁 상태가 존재했기 때문에 행해진 행동으로 생긴 연합국 및 그 국민에 대한 일본국 및 그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동시에, 이 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일본국 영역에 있어서 어느 연합국의 군대 또는 당국의 존재, 직무 수행 또는 행동으로 생긴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19 조(a)).
- (3) 중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원래 강화 회의에 초청되어야 했는데 1949 년에 성립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이에 쫓겨난 형태로 대만에 본거지를 옮긴 중화민국 정부가 다 같이 스스로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통 정부라고 주장하며 연합국 내부에서도 정부 승인의 대응이 나뉘는 상황였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부도 강화 회의에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일본국의 중국에 있어서의 권익 포기(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10 조), 재외 자산 처분(이 조약 14 조(a)2)에 관해서는,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정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되었다(이 조약 21 조).
- (4) 일본국 정부는 그 후 위 (2) 나.에 근거한 역무 배상 등에 관한 협상을 연합국 각국과 진행하는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당사국이 되지 않았던 제국 또는 지역에 대해서도, 전후 처리의 틀을 구축하는 2 국간 평화 조약 등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이 중에서, 최대 현안이 된 것이 강화 회의에 초청되지 않았던 중국과의 관계였는데, 일본국 정부는 1952. 4. 28., 중화민국 정부를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 이 정부와 "일본국과 중화민국 간의 평화 조약" (이하 "일화 평화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조약은 같은 해 8. 5 발효했다. 이 조약에는 일본국과 중화민국 사이의 전쟁 상태가 이 조약 효력 발생의 날에 종료하는 것(1 조), 양국 간에 전쟁 상태 존재의 결과로서 생긴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해결할 것으로 하는 것(11 조) 등의 조항이 있고, 또한 조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의정서의 조항으로, 중화민국은 일본국 국민에 대한 관후와 선의의 상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14 조(a)1 에 의거하여 일본국이 제공해야 하는 역무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의정서 1(b))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조약의 부속 교환 공문에 있어서, 이 조약의 조항이, 중화민국에 관해서는, 중화민국 정부의 지배하에 실제로 있거나 향후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다.

- (5) 중국에서는, 그 후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가 다 같이 정통 정부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사태가 계속되었는데, 일본국 정부는 타나카 카크에이(田中角榮) 내각 때, 중화민국 정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정부 승인의 변경을 하는 방침을 굳혔고 소위 일중 국교 정상화 협상을 거쳐 1972.9.29., "일본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 성명"(이하 "일중 공동 성명"이라 한다)이 발표 되기에 이르렀다. 이 성명 중에는,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그동안의 불정상적인 상태는 이 공동 성명이 발표되는 날에 종료된다."(1 항), "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한다."(2 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한다."(5 항) 등의 조항이 있다.

양국 정부는 1978.8.12.,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평화 우호 조약" (이하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조약은 그 해 10.23.에 발효했는데, 이 조약의 전문에는, 일중 공동 성명에 나타난 여러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4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피상고인들에 대한 각 550 만 엔 및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피상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 (1) 상고인이, 칭다오에서 인도를 받던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중국인 노동자를 일본국으로 이송하고, 야스노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과혹한 노동에 종사시킨 일련의 행위는 강제 연행 및 강제 노동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 상고인과 위 중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직접 계약 관계는 없지만, 특수한 고용 유사 관계에 있으며, 상고인은 그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 배려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고인이 이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므로써,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피상고인들 또는 그 피승계인들에게 의한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현실적인 권리 행사가 객관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1986.2.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출경 입경 관리법이 시행되어 이로 인해 중국의 일반 시민에게 해외 출국의 길이 열린 후라고 봐야 하며,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법 시행일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기 시점에서는 10 년의 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고는 하지만 피상고인들 또는 그 피승계인들이 상고인과 보상 협상을 시작한 1993. 8. 시점에서는 아직 시효 기간은 경과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동안 피상고인들 또는 그 피승계인들은 경제적 곤궁, 정보 부족 등 때문에 사실상 권리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왔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경제적 곤궁, 정보 부족은 상고인에 의한 강제 연행, 강제 노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상고인은 중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것에 관해서 국가 보상금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 상고인은 피상고인들과의 보상 협상에 있어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이를 지속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소를 늦췄다고 할 수 있는 것 등을 종합하면, 상고인의 소멸 시효 원용은 권리 남용이며 허용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4) 상고인은 일화 평화 조약 또는 일중 공동 성명에 따른 청구권 포기의 결과, 일본국 및 일본국 국민이 이 사건 청구에 응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일중 공동 성명 5 항에는 중국 국민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명기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포기한 것은 "전쟁 배상의 포기"에 불과하고, 일화 평화 조약은, 일본국과 중화민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며, 이를 그대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 피상고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상고인의 위 주장을 채용할 수는 없다.

제 2 상고 대리인 히구치 슌지, 타카노 야스히코, 이오다 토시하루의 상고 수리 신청 이유 제 4 에 대해서

1 논지는, 원심의 위 제 1, 4(4)의 판단의 법령 위반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 판단 중,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한 청구권 포기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시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전후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서의 청구권 포기에 대해서

(1) 제 2 차 세계 대전 후의 일본국 전후 처리의 골격을 정하게 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은, 소위 전쟁 배상(강화에 임하여 패전국이 승전국에 대해 제공하는 금전 기타의 급부를 말한다.)에 관한 일본국의 연합국에 대한 배상 의무를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전쟁 배상의 일부에 충당할 취지로, 연합국의 관할하에 있는 재외 자산 처분을 연합국에 맡기는(14 조(a)2) 등의 처리를 정하는 한편, 일본국의 자원은 완전한 전쟁 배상을 하기에는 미흡한 것도 승인된다고 하며(14 조(a) 본문), 그 부담 능력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며 역무 배상을 포함한 전쟁 배상의 구체적 협정에 대해서는, 일본국과 각 연합국 사이의 개별 협상에 맡기기로 했다(14 조(a)1). 그리고 이러한 전쟁 배상 처리의 전제가 된 것이, 소위 "청구권 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 처리"란 전쟁 수행 중에 생긴 교전국 상호 간 또는 그 국민 상호 간의 청구권으로서 전쟁 배상과는 따로 협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의 처리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을 포함해, 전쟁 수행 중에 생긴 상대국 및 그 국민(법인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했다(14 조(b), 19 조(a).)

(2) 이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은,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전쟁 수행 중에 생긴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국은 연합국에 대한 전쟁 배상 의무를 인정하여 연합국의 관할하에 있는 재외 자산 처분을 연합국에 맡기고, 역무 배상을 포함한 구체적인 전쟁 배상의 결정은 각 연합국과 개별적으로 한다는 일본국 전후 처리의 틀을 정하는 것이었다. 이 틀은 연합국 48 개국과 체결되어 이로서 일본국이 독립을 회복했다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본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당사국 이외의 국가 및 지역과 사이에 평화 조약 등을 체결하여 전후 처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틀로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이하, 이 틀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이라 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은, 일본국과 연합국 48 개국과 사이의 전쟁 상태를 최종적으로 종료시키고, 장래에 향해 확고한 우호 관계를 이루는다는 평화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며, 이 틀이 정해진 것은,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 수행 중에 생긴 각종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사후적 개별적인 민사 재판상의 권리 행사로 해결하려는 처리에 맡긴다면, 장내 어느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해서도 평화 조약 체결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어,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평화 조약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3)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에 있어서 청구권 포기의 취지가 위와 같이 청구권 문제를 사후적 개별적인 민사 재판상의 권리 행사에 의한 해결에 맡기는 것을 피하는 점에 있음을 감안하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 "포기"란 청구권을 실제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구권에 의하여 재판상 소구(訴求)하는 권능을 소멸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에 의해서, 전쟁 수행 중에 생긴 모든 청구권의 포기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개별 구체적인 청구권에 대해,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채무자 측에서 임의로 자발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14 조(b)의 해석에 관해,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 총리 대신이, 네덜란드 왕국 대표 스티커 외무 장관에 대한 서한으로, 위와 같은 자발적인 대응의 가능성을 표명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피상고인들은 국가가 그 가지는 외교 보호권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 고유의 권리인 사권(私權)을 국가 간 합의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가는 전쟁의 종결에 따른 강화 조약 체결에 임하여, 대인 주권에 근거하여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청구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채용 할 수 없다.

- (4)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체결 후, 일본국 정부와 이 조약 당사국 정부 사이에서는 이 조약에 따라, 역무 배상을 포함한 전쟁 배상의 방법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2 국간 배상 협정이 체결되어(필리핀 공화국 등), 혹은 배상 청구권이 포기되는데(라오스 인민 민주 공화국 등), 거기에서는 당연히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청구권 상호 포기가 전제가 되었다. 일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당사국이 되지 않았던 여러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2 국간 평화 조약 또는 배상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전쟁 배상 및 청구권 처리를 추진했는데, 이들 조약 등에서도, 청구권 처리에 관해, 개인 청구권을 포함해서 전쟁 수행 중에 생긴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정해지고 있다("일본국과 인도 사이의 평화 조약" 6 조, "일본국과 버마 연방 사이의 평화

조약"5 조, "특별 엔 문제 해결에 관한 일본국과 타이 간 협정"3 조, "네덜란드 국민의 모종 사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사이의 의정서"3 조, "일본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공동 선언"6 항, "일본국과 폴란드 인민 공화국 사이의 국교 회복에 관한 협정"4 조, "일본국과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평화 조약"4 조, "일본국과 싱가포르 공화국 사이의 1967. 9. 21. 협정"2 조, "태평양 제도 신탁 통치 지역에 관한 일본국과 미국 사이의 협정"3 조 등). 또한"일본국과 마레이시아 사이의 1967.9.21. 협정" 2 조는, "마레이시아 정부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양호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 2 차 세계 대전 중의 불행한 사건으로 생긴 모든 문제가 여기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에 동의한다."라는 약간 추상적 표현이며 표현으로서는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협정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나 그 이후의 위 2 국간 평화 조약에 있어서의 청구권 처리와 다른 청구권 처리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조항도, 개인 청구권을 포함해서 전쟁 수행 중에 생긴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에 따르는 취지로 해석된다.

### 3 일화 평화 조약에 따른 청구권 포기

(1)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후 처리에 관한 조약으로서는, 위와 같이, 중화민국 정부와 사이에 체결된 일화 평화 조약이 존재한다. 이 조약 11 조는,"일본국과 중화민국 사이의 전쟁 상태 존재의 결과로서 생긴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해당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그 중에는,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청구권 처리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에 따르면, 중일 전쟁 수행 중 생긴 중국 및 중국 국민의 모든 청구권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14 조(b)의 규정에 준해서 포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위와 같이, 의정서 1(b)에는 "일본국 국민에 대한 관후과 선의의 표징"으로 역무 배상도 포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근데, 일화 평화 조약이 체결된 1952 년 당시, 중화민국 정부는 중국 대륙을 쫓겨나 대만 및 그 주변의 제도를 지배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으므로, 이 정부가 중일 전쟁의 강화에 관한 평화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중국 정부 승인을 둘러싸고는, 중화민국 정부를 승인하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과 중화 인민공화국 정부를 승인하는 영국을 비롯한 국가들로 양분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수 위에서는 전자가

후자를 앞서고 있었으며, 또, 국제 연합에서 중국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중화민국 정부였던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국 정부가 중화민국 정부를 중국의 정통 정부로 승인한 것이며, 그렇다면, 중화민국 정부가 중일 전쟁 강화에 관한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에는 장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3) 하지만, 위와 같이, 일화평화 조약이 체결된 당시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 및 그 주변의 제도를 지배하는 것에 그쳤고, 교환 공문에는 이를 전제로, "이 조약의 조항이, 중화민국에 관해서는, 중화민국 정부의 지배하에 실제로 있거나 앞으로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라는 기재가 있다. 이 기재에 따르면 전쟁 배상 및 청구권 처리에 관한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지배하던 중국 대륙에 대해서는, 장래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충분히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 배상 및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청구권 포기를 정하는 일화 평화조약 11 조 및 의정서 1(b)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 조약 체결 후 중화민국 정부 지배하에 놓인 것이 없던 중국 대륙에 적용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에 대해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피상고인들이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이라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들에게 대해 당연히 이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4 일중 공동 성명 5 항에 따른 청구권 포기

- (1) 일중 공동 성명 5 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선언한다."고 하는데, 그 문언을 보는 한, 포기의 대상이 되는 "청구"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고, 국가 간의 소위 전쟁 배상 외에 청구권 처리를 포함한 취지인지, 또 청구권 처리를 포함한다고 해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청구권의 포기를 포함한 취지인지, 반드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 (2) 하지만, 공표된 중일 수교 협상의 공식 기록이나 관계자의 회고록 등에 근거한 고증을 거쳐서 오늘날에는 공지의 사실이 된 교섭 경위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일중 공동 성명은 평화 조약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하고, 일중 공동 성명으로, 전쟁 배상 및 청구권 처리에 대해 산 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과 다른 협정이 합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중 국교 정상화 협상에 있어서, "복교 3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처리를 주장했다. 이 복고 3 원칙이란 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②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고, ③ 일화 평화 조약은 불법,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입각한 경우, 중일 전쟁의 강화는 아직 처리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일중 공동 성명에는 평화조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필요가 있어, 전쟁 종결 선언과 전쟁 배상 및 청구권 처리가 불가결했다.

이에 대해, 일본국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를 중국의 정통 정부로 승인해서 일화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는 경위에서, 이 조약을 미래에 향해 종료시킬 것은 별론으로 하고 중일 전쟁의 종결, 전쟁 배상 및 청구권 처리와 같은 사항에 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일화 평화 조약에 의해 해결됐다는 전제에 입각할 수 밖에 없었다(일화 평화 조약의 전쟁 배상 및 청구권 처리 조항이 중국 대륙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위와 같지만, 당시 일본국 정부는 그러한 견해를 채용하지 않았다.).

나. 중일 국교 정상화 협상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그 어느 쪽도 이상과 같이 다른 전제에 입각하며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서도 모순되지 않고 중일 전쟁의 전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하여, 공동 성명의 표현이 모색되고, 그 결과 일중 공동 성명 전문에 있어서, 일본국 측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제기한 복고 3 원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 입각하는 것이 표명되었다. 그리고, 일중 공동 성명 1 항의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이 공동 성명이 발표되는 날에 종료된다."라는 표현은, 중국 측에서 보면 중일 전쟁 종료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한편으로, 일본국 측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국교가 없었던 상태가 이에 따라 해소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채용된 것이었다.

다. 이상과 같은 일중 국교 정상화 교섭 경위에 비추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일중 공동 성명 5 항을 전쟁 배상뿐 아니라 청구권 처리도 포함한 모든 전후 처리를 이루어진 창설적인 규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일본국 정부로서도 전쟁 배상 및 청구권 처리는 일화 평화 조약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생각은 유지하면서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도 실질적으로 이 조약과 같은 귀결이 된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이해에 서서 그 표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경위를 거쳐 발표된 일중 공동 성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국 정부로서도 평화 조약의 실질을 갖고 있는 것에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은 평화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을 벗어나고 청구권 처리를 미정 상태로 놓은 채 전쟁 배상만 마무리시키고, 혹은 청구권 포기의 대상에서 개인 청구권을 제외한 경우, 평화 조약의 목적 달성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일중 공동 성명 발표에 있어서 굳이 그러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아무런 사정도 엿볼 수 없고, 일중 국교 정상화 협상에 있어서 그러한 관점에서 문제 제기되거나 협상이 행해진 흔적도 없다. 그러므로, 일중 공동 성명 5 항의 문언상, "청구"의 주체로서 개인을 명시하지 않다고 해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과 다른 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상에 의하면, 일중 공동 성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과 다른 취지가 아니라 청구권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을 포함한 전쟁 수행 중에 생긴 모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한 것을 밝힌 것이라고 해야 한다.

(3) 위와 같은 일중 공동 성명 5 항의 해석을 전제로, 그 법 규범성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일중 공동 성명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조약으로서 취급되지 않고, 국회의 비준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국제법상의 법규범성에 대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창설적인 국제법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적어도 중국 측의 일방적인 선언으로서 법 규범성을 긍정 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법상 조약이라는 것이 분명한 일중 평화 우호 조약에 있어서, 일중 공동 성명에 나타난 여러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일중 공동 성명 5 항의 내용이 일본국에 있어서도 조약으로서의 법규범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그 국제법상의 법규범성이 인정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에 있어서는 청구권 포기란 청구권에 근거하여 재판상 소구하는 권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내 법상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중 공동 성명 5 항에 정한 청구권 포기도, 이와 같이 국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야 한다.

(4) 이상의 검토에 따르면, 중일 전쟁 수행 중에 생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일본국 또는 그 국민 혹은 법인에 대한 청구권은 일중 공동 성명 5 항에 의하여, 재판상 소구하는 권능을 잃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청구권에 근거한 재판상의 청구에 대해 위 항에 근거한 청구권 포기의 항변이 주장되었을 때에는, 해당 청구는 기각을 면할 수 없게 된다.

##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중일 전쟁 수행 중 발생한 중국인 노동자 강제 연행 및 강제 노동에 관련된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이고, 앞에서 본 사실 관계를 감안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지극히 큰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일중 공동 성명 5 항에 따른 청구권 포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자발적인 대응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재판상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권 포기를 주장하는 상고인의 항변은 이유가 있고, 이와 다른 원심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법령 위반이 있다. 논지에는 이유가 있고, 원심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앞에 실시한 바에 의하면, 그 외의 점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피상고인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해야 하며, 이를 기각한 제 1 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기 때문에, 피상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또한 전기 2(3)과 같이,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의 틀에 있어서도, 개별 구체적인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측에 있어서 임의로 자발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히 컸던 한편으로, 상고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근무 조건으로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고 나름대로의 이익을 받고 게다가 앞서 본 보상금을 취득한 것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자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따라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재판관 나카가와 료지  
재판관 이마이 이사오  
재판관 후루타 유키

[→ HOME](#)